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8.(수) 12:00 / 배포 2026. 11. 18.(수) 07:00
<11. 19.(목) 조간>

한신공영(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신공영㈜**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3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많은 국내회사

**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 가능

한신공영㈜는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 및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약 1년 1개월**(2024. 2. 29. ~ 2025. 3. 27.) 및 **약 4개월**(2024. 11. 12. ~ 2025. 3. 10.) **간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공정위는 **한신공영㈜**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한신공영㈜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음잔디 (044-200-4842)
		담당자	조사관	박지훈 (044-200-48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한신공영㈜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1 한신공영㈜ 등 일반현황

□ (지주회사) 코암시앤시개발(주)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11.12.31.	...	`21.12.31.	`22.12.31.	`23.12.31.	`24.12.31.	`25.12.31.
자산총액(A)	118,717		259,090	280,095	297,957	303,924	320,943
자회사 주식가액(B)	111,465		246,710	268,119	280,921	284,380	307,523
지주비율(B/A)	93.9		95.22	95.72	94.28	93.57	9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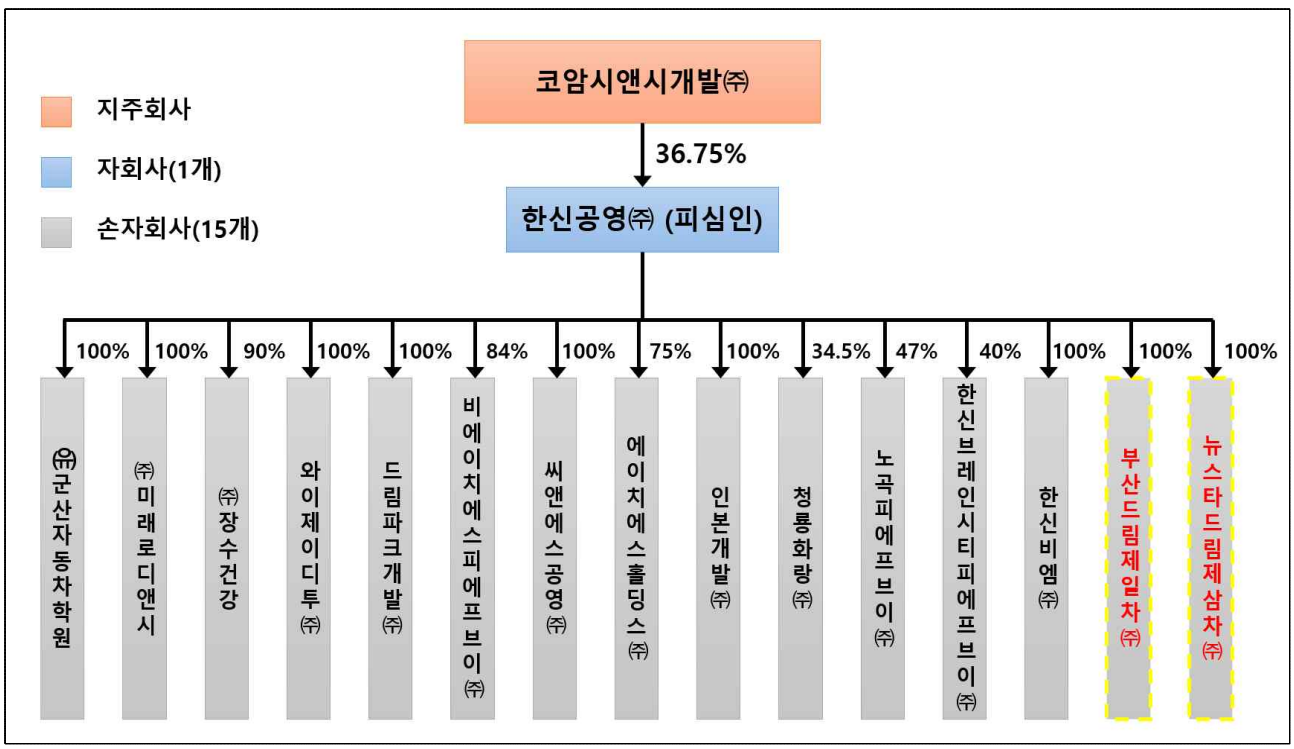
□ (자회사) 한신공영(주) 일반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영위업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1950. 3. 5.	종합 건설업	1,930,089	1,101,044	829,045	1,113,570	34,268

□ 코암시앤시개발(주)의 자・손자회사 현황

(2024. 12. 31. 기준)



2 법 위반 내용

□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인 **한신공영㈜**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 및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K64999)'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에 해당함

○ 한신공영㈜가 **부산드림제일차㈜** 및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주식을 보유한 법 위반행위는 각각 **약 1년 1개월, 약 4개월 간** 지속되었다.

3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3호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조치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참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규정

□ 지주회사 요건

○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17. 7. 1. 이전 1,000억 원*) 이상이고,

* 다만, '17. 7. 1.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27. 6. 30.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제외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됨

○ **(지주비율 기준)**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

□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규제대상	규제 내용	現 공정거래법 조항
지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	제18조 제2항 제1호
	비계열사의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비계열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미적용)	제18조 제2항 제3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外 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2항 제4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공통 (지주·자·손자)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外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의무)	제18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8조 제4항
	지분율 규제(상장 등 30%, 비상장 50% 이상)	제18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지주회사 체제 내 금융·보험회사 지배 금지	제18조 제3항 제3호 제18조 제4항 제4호
손자	증손회사(지분율 100%)外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4항
증손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5항